

▶ 신고절차

신고서와 신고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및 현지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▶ 유효기간

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이며, 계속하여 신고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, 갱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▶ 갱신신고

- 갱신신고를 하려는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갱신신고 이후 신고의 유효기간은 기존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.

* ex) 최초신고 승인일: '21.11.20 (유효기간: ~'24.11.20)

→ 갱신신고 승인일: '24.10.20 (유효기간: ~'27.11.20)

▶ 신고방법

전문연구사업자 신고관리시스템(<https://regist.rndia.or.kr>)에서 신고

▶ 제출서류

-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는 기업은 지정서식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, 사업개요,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, 연구기자재 명세서, 사업 명세서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하고, 신고업종에 따른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[필수 제출서류]

지정서식	제출서류
① 신고서(별지 제1호)	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
② 사업 개요(별지 제2호)	-
③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(별지 제3호)	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,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, 전문인력 재직 증명(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)
④ 연구기자재 명세서 (별지 제4호)	연구기자재 증빙 사진(주문연구만 해당)
⑤ 사업 명세서 (별지 제5호)	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, 매출장, 연구산업 매출 및 실적 증빙 계약서(협약서) 연구장비·재료 자체 개발 입증서류 (지재권, 정부 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서 등) (연구장비·연구재료에 한함)

4. 신고기업 지원

구분	지원내용
국가연구 개발사업	참여자격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및 R&D 바우처 공급기관으로 참여 가능
	연구비 인건비 현금계상 및 간접비 10%까지 계상 가능
조세지원	자체연구 자체연구개발(연구인력 인건비 등)에 대한 세액공제
	위탁연구 전문연구사업자에게 위탁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
인력지원	병역특례 주문연구산업에 대하여 신규채용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
	인력양성 교육훈련(국가연구개발 과제계획서, 연구비관리 등) 및 세미나

5. 사후관리

▶ 변경신고

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중요한 사항(대표자, 소재지 등)이 변경된 경우,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▶ 과태료 부과

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구분	변경신고 사유	과태료 부과 사유
내용	- 상호 또는 명칭	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
	-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
	-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	- 신고요건 등의 위반여부를
	- 대표자	확인하기 위한 보고·제출을
	- 신고업종	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등

[문의]

한국연구산업협회
www.rndia.or.kr

02-779-9071

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 안내

※ 본 자료는 복권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1. 전문연구산업 신고제도란?

주문연구, 연구관리, 연구장비, 연구재료 등 연구산업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
신고된 전문연구사업자에게 사업 및 정책지원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6조(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)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.

②~⑤ (중략)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,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(약칭: 이공계지원법)에 따라 신고한 기존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「연구산업진흥법」에 따른 "전문연구사업자"로 3년간 신고가 유지됩니다.

2.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요건 및 세부업종

연구산업에서 활동하는 연구사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,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작성을 위해 주문연구, 연구관리, 연구장비, 연구재료 등 산업별로 신고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.

[전문인력범위]

- 자연과학, 공학, 의학계열의 학위소유자 / 기술사,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자. (단, 대표자 제외함, 3년 미만의 소기업 대표자는 포함)
- 다만, 연구관리산업의 경우,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유자도 전문인력에 포함시킴.

주문연구산업

인적 요건



전문인력
3명 이상

물적 요건



분리된 연구공간, 직접
사용되는 연구기자재

매출액 요건



총매출액 대비
주문연구 매출 30%

연구개발을 독립적 수행 또는 전부·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
*시험·검사 및 분석업: 전문인력 2명 이상

연구관리산업

인적 요건



전문인력
2명 이상

매출액 요건



총매출액 대비
연구관리 매출 30%

연구개발 기획, 관리 및 사업화지원, 기술정보
조사·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

연구장비산업

인적 요건



전문인력
2명 이상

실적 요건



자체 개발 연구장비 1개 이상,
해당 연구장비 납품실적 연 3건 이상

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, 주변시스템 등을 개발·개조·유지·보수하는 산업
*연구장비 유지·보수업: 연구장비 유지·보수실적 연 3건 이상

연구재료산업

인적 요건



전문인력
2명 이상

실적 요건



자체 개발 연구재료 1개 이상,
해당 연구재료 납품실적 연 3건 이상

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

[연구산업 세부업종]

구분	세부업종	구분	세부업종
주문 연구	자연과학 연구개발업	연구 장비	광학·전자영상장비 개발업
	공학 연구개발업		화학물질처리·분석장비 개발업
	융합 연구개발업		물리적측정장비 개발업
	시험·검사 및 분석업		그밖의 연구장비 개발업
연구 관리	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 관리업	연구 재료	연구용 물질·시약 개발업
	연구개발성과 관리·활용 지원업		연구용 기구 개발업
	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		그밖의 연구재료 개발업
	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		
	연구실 안전관리업		

3.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절차

